

## 오산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

제정 1989년 1월 1일 규칙 제 14호  
개정 2001년 10월 31일 규칙 제476호 부칙  
개정 2006년 7월 13일 규칙 제580호  
일부개정 2011년 12월 20일 규칙 제702호  
(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오산시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(이하 “모범공무원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추천)** ① 모범공무원은 시의 국장·담당부서장·소장 및 동장이 추천한다. <개정 2001. 10. 31, 2011. 12. 20>

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 내용,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

③ 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. 다만, 「모범공무원규정」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. <개정 2006. 7. 13>

**제3조(선발)** 모범공무원은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 3명 이내로 선발한다. <개정 2006. 7. 13>

**제4조(인사상의 특혜)**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.

1.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

2. 동,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 본청 결원시 우선 전입

**제5조(모범공무원수당 지급)**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,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. <개정 2006. 7. 13>

② 모범공무원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. <개정 2006. 7. 13>

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모범공무원수당 증서를 교부한다. <개정 2006. 7. 13>

## 오산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

**제6조(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의 중지)**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. <개정 2006. 7. 13>

1. 퇴직 또는 면직된 때
2. 징계처분을 받은 때
3.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
4. 타도에 진출한 때

② 모범공무원이 시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전입되는 시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### 부칙

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01. 10. 31 규칙 제476호 부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06. 7. 13 규칙 제58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11. 12. 20 규칙 제702호,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** ① 부터 ⑰ 까지 생략

⑱ 「오산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국장·담당관·소장”을 “국장·담당부서장·소장”으로 한다.

⑲ 부터 ⑳ 까지 생략

[별지] <개정 2006. 7. 13>

제 호

## 모범공무원수당 증서

소 속 :

직 · 성명 :

위 사람은           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오산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.

지 급 액 :           원

지급기간 :       년   월   일부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   월   일까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   월   일

오   산   시   장

